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14호
-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제출일자 : 2025년 8월 11일
-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II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및 확대
-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현행화

III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14조의2제6항개정)
-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휴가 및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 지원을 위한 새내기 휴가 등 특별휴가 신설(안제14조의2제11항)

및 제12항신설)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 일수 수정([별표3]개정)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59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7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1)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1]

2) 입법예고(2025.6.18.~7.9.)결과요약서:[별첨3]

3) 교육규제심사: 대상아님

4) 부패영향평가결과통보서:[별첨4]

5) 성별영향평가서제출제외통보확인서:[별첨5]

6) 학생인권영향평가검토의견서:[별첨6]

7) 지방공무원노조의견처리결과:[별첨7]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114호로 제출되어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출산 및 사망)일수를 조정·확대하며,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 지원을 위하여 보육휴가와 새내기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사항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²⁾ 등 상위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⑯ (생략)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체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³⁾, 「지방공무원법」 또한 복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특별휴가의 종류·기간·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되, 대통령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조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제처의 의견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사유나 일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새로운 특별휴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⁴⁾.
- 따라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출산 및 사망)를 확대 적용하고,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장기재직휴가’, ‘새내기휴가’, ‘보육휴가’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 및 정부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

3)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4) (법제처 2024. 3. 8. 회신 24-0073 의견제시 요약)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한다) 제7조의7제1항 본문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 사유별로그 휴가일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별로 그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특별휴가 사유별 휴가일수 외에 다른 특별휴가 사유에 따른 휴가일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증평군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보육휴가는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도록 하고, 법령의 위임 규정과 상위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인 바,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특별휴가에 대한 검토(안 제14조의2)

■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검토(안 제14조2제6항)

- 안 제14조의2제6항은 장기재직휴가의 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종전보다 5일 또는 10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세부적으로 10년 이상 18년 미만 재직자는 10일에서 15일로, 18년 이상 25년 미만 재직자는 15일에서 20일로, 25년 이상 재직자는 20일에서 30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재규정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이미 장기재직 휴가기간의 휴가 부여 일수를 재직기간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장기재직휴가 일수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직 구간별로 휴가 일수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선 장기재직휴가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2021~2025.6.) 서울 시교육청의 장기재직휴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인원 대비 사용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의 활용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재충전의 기회 및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기 진작에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조직적 차원에서는 이직을 방지하고 조직 운영의 활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기재직휴가 대상 인원은 2021년 5,461명에서 2025년 상반기 6,782명으로, 최근 5년간(2021~2025.6.) 1,321명(24.2%) 증가하였으며, 이 중 총 9,188명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비율은 29.8%(9,1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직급별 장기재직휴가 및 연가 사용 현황(2021~2025.6.30.)

(단위: 명,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6.	합계
장기재직휴가 대상인원(A)	5,461	5,448	6,463	6,662	6,782	30,816
장기재직휴가 사용인원(B)	1,097	1,901	2,302	2,789	1,099	9,188
장기재직휴가 사용일수(C)	5,553	10,118	11,750	13,255	4,379	45,055
장기재직휴가 사용비율(B/A)	20.1	34.9	35.6	41.9	16.2	29.8

*출처: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

- 그러나 이러한 장기재직휴가 확대는 그만큼 업무 공백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대직자 업무 부담과 함께 단기근속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기존 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 증가로 이어져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 또한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해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타시도와의 장기재직휴가의 형평성을 이유를 들어 같은 생활권인 서울시와 동일하게 총 70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물론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16개 시·도교육청의 장기재직휴가 운영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은 총 80일로 가장 많은 휴가를 부여하는 반면,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은 총 50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장기재직휴가를 위한 재직기간 기준을 16개 시·도교육청 및 서울시와 달리 10년 단위로 운영하지 않고, 7~8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바, 휴가일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표-2] 서울시 및 타·시도교육청 장기재직휴가 운영 현황

(기준일: 2025.8.19.)

구 분	재직기간별 휴가 일수							합계	
	5~9년	10~17년	10~19년	18~24년	20~29년	25년~	30년~		
서울시 (지자체)	5일		15일		25일		25일	70일	
서울 (현행)	5일	10일	-	15일	-	20일	-	50일	
서울 (개정안)	5일	15일	-	20일	-	30일	-	70일	
부산	5일	-	15일	-	25일	-	25일	70일	
대구	-	-	10일	-	20일	-	20일	50일	
인천	10일	-	15일	-	25일	-	30일	80일	
광주	5일	-	10일	-	20일	-	20일	55일	
대전	5일	-	10일	-	25일	-	30일	70일	
울산	5일	-	10일	-	20일	-	20일	55일	
교 육 청	세종	5일	-	10일	-	20일	-	30일	65일
경기	5일	-	10일	-	20일	-	20일	55일	
강원	5일	-	10일	-	20일	-	30일	65일	
충북	5일	-	15일	-	20일	-	20일	60일	
충남	5일	-	10일	-	20일	-	30일	65일	
전북	5일	-	15일	-	20일	-	25일	65일	
전남	5일	-	10일	-	20일	-	30일	65일	
경북	5일	-	10일	-	20일	-	20일	55일	
경남	10일	-	15일	-	25일	-	30일	80일	
제주	5일	-	10일	-	20일	-	20일	55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히 서울특별시(지자체)와 비교하면, 30년 미만의 재직자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서울특별시는 총 45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총 5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바,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의 휴가일수가 5일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또한 안 제14조의2제6항은 ‘10년 이상 18년 미만’과 ‘18년 이상 25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종전보다 5일을 추가하고 있는데 반해, ‘25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는 10일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장기재직 휴가 일수도 5일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는 5일로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년 이상 재직자에게 10일을 추가함으로써 구간별 휴가 일수의 차이를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 이처럼 금번 개정안은 오히려 장기재직휴가를 특정 연차 공무원에게 편중해서 확대함으로 인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뿐만이 아닌 ‘10년 이상 18년 미만’ 및 ‘18년 이상 25년 미만’ 구간의 재직자 공무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직 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서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사용가능 횟수 제한을 폐지할 예정에 있는바, 이는 관리직급에 있는 공무원의 업무 공백을 상대적으로 하위직급보다 가속화 할 수 있는 우려 또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안 제14조의2제6항은 단지 타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총 휴가일수를 맞추기 위한 개정이 아닌 장기재직 휴가 확대의 구간별 적정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장기재직휴가 대상자의 근무 기간에 대한 구간 조정이 우선적으로 통일되어야 함이 전제가 된 이후 확대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별휴가(보육휴가) 신설에 대한 검토(안 제14조의2제11항)

- 안 제14조의2제11항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보육을 위하여 연간 5일의 범위 내에서 보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육휴가 일수의 합산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영유아 보육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휴가 제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⁵⁾.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 그러나 ‘보육휴가’ 제도의 신설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⁶⁾ 공무원의 영·유아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임에 관한 법적 문제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14조의2제11항은 보육휴가를 5일(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도 합산 5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합산 휴가일 수 5일 부여시 자녀 수(1명 또는 2명 이상)에 따른 휴가 부여일수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기준으로 연 5일만 부여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대상자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운영 과정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현재 ‘보육휴가’ 제도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감 소속 복무규정을 통해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3] 타·시도교육청 보육휴가 제도 시행 현황

(기준일: 2025.8.19.)

구분	대상 자녀	휴가 일수	시행일
인천	4세 이하	연 5일	2018. 1. 2.
광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연 3일	2025. 4.25.
경기	4세 이하	연 5일	2015. 4. 9.
강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연 5일	2025. 7. 4.
충북	8세 이하 또는	① 두 자녀 이하: 연 7일	2025. 1. 1.

6) 인사혁신처,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 2024.5.17.

	초등학교 2학년 이하	② 세 자녀 이상: 연 12일 ③ 장애 자녀: 연간 12일(나이제한 없음)	
충남	4세 이하	연 5일 (장애, 다태아 연 7일)	2024. 7.10.
전북	4세 이하	연 5일	2018. 4.27.
전남	7세 이하(취학전)	연 5일	2024. 7. 4.
경북	8세 이하	연 5일	2024. 5.23.
경남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① 두 자녀 이하: 연 7일 ② 세 자녀 이상 및 한부모: 연 12일 ③ 장애 자녀 공무원: 연 12일(중증장애인 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2025. 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별휴가(새내기휴가) 신설에 대한 검토(안 제14조의2제12항)

- 안 제14조의2제12항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대민 응대 업무의 복잡성과 악성 민원이 증가하면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낮은 보수 수준과 제한된 처우가 겹치면서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바⁷⁾,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내기휴가’ 신설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⁸⁾.
 -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⁹⁾, 재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퇴사는 2019년 6,500명에서 2023년 13,56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퇴직자 중 신규임용

7) 월간 노동법률, “저연차 공무원이 사라진다”...이탈 부추기는 핵심 원인은 ‘저임금’, 2025.5.19., 서울신문, [단독] 박봉에 악성 민원까지...저연차 공무원 68% “그만두고 싶다”, 2024.10.22., 동아일보, [단독] 재직 1년도 안된 공무원 3021명 퇴직 9년새 5.6배, 2024.10.8.,

8) 강원일보, 강원교육청 신입 공무원 이탈 급증에 ‘새내기휴가’신설, 2025.4.21., 천지일보,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새내기·육아 휴가 신설, 2025.3.12., 중앙일보, “공무원 퇴직 막자”…새내기 쉬게 해주고 없앴던 휴가 부활 추진, 2024.9.4.

9) 국회입법조사처,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이슈와 논점』 제2203호, 2024. 2. 28.

공무원의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7.1%에서 23.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4] 최근 5년간(2019~2023년)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퇴직자(A)	37,981	47,319	44,676	54,993	57,163
신규임용퇴직자(B)	6,500	9,009	10,426	13,032	13,566
비율(B/A)	17.1	19.0	23.0	23.7	23.7

* 신규임용퇴직자는 임용 후 5년 이내의 자를 말함.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이와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5년간(2021~2025.6.) 저연차 일반직 공무원의 이탈 현황 보면, 전체 저연차 인력 대비 약 2.5%(239명)에 불과하나, 연 평균 48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탈하는 등, 임용 초기 단계에서 조직을 떠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무엇보다 이러한 초기 이탈은 장기적으로 행정 역량의 축적과 전문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규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적응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 직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표-5] 서울시교육청 저연차(5년 이하) 일반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2021~2025.6.30)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6.	합계
인원(A)	1,705	1,841	2,048	2,156	1,983	9,733
의원면직(B)	59	47	57	52	24	239
비율(B/A)	3.5	2.6	2.8	2.4	1.2	2.5

* 출처: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

- 이에 따라 안 제14조의 2제12항의 ‘새내기휴가’ 제도는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동 조항은 정부 정책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아직 이에 대한 정책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단순한 제도 신설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을 적극 장려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과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현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에서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또는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내기휴가’ 또는 ‘새내기도약휴가’ 이미 도입 ·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6] 타·시도교육청 새내기(도약)휴가 제도 시행 현황

(기준일: 2025.8.19.)

구분	휴가명	대상 재직기간	휴가 일수	시행일
인천	새내기휴가	1년이상 5년미만	5일	2025. 4.21.
대전	새내기도약휴가	1년이상 5년미만	3일	2025. 4.11.
울산	새내기도약휴가	1년이상 5년미만	5일	2025. 1. 1.
세종	새내기도약휴가	1년이상 5년미만	3일	2024.11.11.
경기	새내기도약휴가	1년이상 5년미만	3일	2024. 7.18
강원	새내기휴가	1년이상 5년미만	5일	2025. 7. 4.
충북	새내기도약휴가	5년 미만	2일	2025. 1. 1.
충남	새내기도약휴가	5년 미만	3일	2025. 7.10
전북	새내기휴가	1년이상 5년미만	3일	2025. 4.18
경남	새내기휴가	1년이상 5년미만	5일	2025. 6.12.

* 새내기휴가 사용 기간은 교육청별로 상이함(재직기간 중 사용, 연 단위 사용 등).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조례 법령명 표기 정비에 대한 검토(안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

- 안 제14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및 제14조의4(시간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는 혈행 본문에 표기된 ‘지방공무원 복무규

정' 을 '영' 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따르면,¹⁰⁾ 법령을 인용할 때 그 종류를 표시하는 약칭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정확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¹¹⁾ 대통령령임을 나타내는 약칭("영")으로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경조사(출산 및 사망) 휴가 일수에 확대에 대한 검토(안 제14조의제1항 [별표3])

- 안 제14조제1항 [별표3]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종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다태아(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에는 25일을 부여하도록 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에는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7]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 개정 사항(별표3)

현 행			개 정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	출산	배우자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 (25)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이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¹²⁾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¹³⁾에서 배

10)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2024), pp.732-733.

1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66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본인 및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일수를 3일로 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현주(2180-8272)
----------	----------------	-------	----------------

1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1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